

사립대학교 기록평가업무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cords Appraisal in Private Universities

김지연(Jiyeon Kim)¹, 김유승(Youseung Kim)²

E-mail: jiyeon6023@gmail.com, kimyus@cau.ac.kr



1 제1저자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 전공 석사과정
2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논문접수 2025.07.14
최초심사 2025.07.28
게재확정 2025.08.24

ORCID

Jiyeon Kim
https://orcid.org/0009-0000-5879-0525

Youseung Kim
https://orcid.org/0000-0002-3087-3553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이 논문은 김지연의 석사학위 논문 「대학기록물 평가 운영 개선을 위한 연구 - 사립대학을 중심으로」(2025)를 요약·수정된 것임

초 록

사립대학교는 「공공기록물법」의 적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율이 20.6%에 그쳐, 기록평가와 폐기의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립대학의 기록평가업무 개선방안을 논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고는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사립대학기록의 특징을 논하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사립대학 기록관리 담당자 7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근거이론의 개방코딩을 통해 181개의 코드를 도출하여 현황, 문제점, 개선점의 3개 영역으로 분석하는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면담연구 결과, 주요 문제점으로 학내 구성원의 기록관리 인식부족, 평가절차 및 제도의 실효성 한계, 기록관리 문제, 외부협력 및 지원부재,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업무환경 문제 등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운영 측면에서 학내 구성원 대상 기록관리교육의 법정 의무화, 기록분류기준표 제개정 시 처리과 의견수렴 절차 마련, 처리과 실사 제도화, 정부 차원의 전문교육 지원 및 기록관리 기반 구축 지원사업 추진 등을 논하고, 법제도 측면으로 사립대학 기록관리의 자율성 보장과 정부 점검 및 감사 강화를 위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study aims to examine ways to improve records appraisal practices in private universities. This qualitative study included interviews with seven records management personnel, derived 181 codes through the open coding method of grounded theory, and analyzed them in three areas: current status, problems, and improvements. The interviews revealed major problems, such as insufficient awareness of records management among university members, the limited effectiveness of appraisal procedures and systems, issues in records management practices, lack of external cooperation and support, and problems with the work environment of records management professionals. To address these issues, the study proposes measures to improve operational practices and legal systems.

Keywords: 공공기록물법, 기록물관리전문요원, 기록평가, 기록폐기, 사립대학교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Record management specialist, records appraisal, records disposal, private university

1. 시작하는 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은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제27조), “이를 위반하여 심사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기록물을 폐기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50조 제2호). 이에 국립대학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율은 97.6%에 달한다. 하지만, 국립대학과 동일하게 「공공기록물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립대학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율은 20.6%에 그치고 있다. 배치 대상 209개 사립 대학 중 43개의 대학만이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배치하고 있을 뿐이다(국가기록원, 2024a). 이는 다수의 사립대학이 기록평가와 폐기의 관점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방증한다.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사립대학들은 법에 따른 기록평가와 폐기 절차를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기록물관리전문가의 핵심적 책무이자 전문성이 요구되는 활동인(Williams, 2006, 38) 평가 업무가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은 사립대학 기록관리 전반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평가는 업무 맥락, 업무 활동 및 위험 분석을 포함하는 기록관리 업무의 핵심이며(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16, ISO 15489-1), 기록증거를 체계적으로 남기는 활동의 기본이기 때문이다(설문원, 2018, 36). 대학의 구성원이 교육, 연구, 행정활동을 통해 매 학기 수많은 기록을 생산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평가는 대학의 기록관리를 위한 핵심적 업무다. 대학의 정체성 확립과 행정의 투명성 강화, 나아가 대학기록유산의 진승을 위하여 적극적인 기록관리를 실천해야 하는(손동유, 2004, 1) 사립대학에게 평가 업무의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다.

이에 본 연구는 기록관리의 핵심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기준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사립대학의 평가 업무에 집중하여, 문헌 연구와 면담 연구를 통해 사립대학 기록 평가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대학의 기록관리 일반을 논한 연구와 대학의 기록평가제도를 다룬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학의 기록관리를 다룬 초기 국내 학술연구는 20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부분의 초기 연구들은 대학기록관의 설립 및 설치 등에 관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 연구성가로 김상호(2000)의 “대학기록보존소의 기능과 조직에 관한 연구”, 최정태(2000)의 “대학기록관의 확립과 운영에 관한 연구”, 이교현(2001)의 “대학기록관의 설치·운영방안”, 이종흡(2001)의 “대학기록관 설립의 필요조건” 등이 있다. 후속연구로서 심상순(2003)은 대학기록관의 설치현황과 법적 기준을 분석하였고, 손동유(2004)는 사립대 아카이브즈의 위상과 기능을 고찰하였다.

2010년대 들어, 대학기록관리를 다룬 연구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김두리와 김수정(2014), 배성중(2024), 이혜경과 이해영(2014), 정우철과 이해영(2016) 등이 대학기록관의 기록정보서비스를 다양한 관점에 논하였고, 김민경 외(2018), 김송 외(2025), 이재영과 정연경(2019; 2020; 2021) 등은 폐교 사립대학의 기록관리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다루었다. 이은정과 강순애(2020), 이주현와 이성신(2018) 등은 대학기록관리 담당자의 직무를 분석하였으며, 김은진과 구정화(2020), 조민정과 김지현(2024) 등은 대학기록관의 홍보를 주제로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외 대학기록관의 내부 마케팅을 논한 구영미와 홍현진(2019), 대학의 이메일 기록관리를 다룬 박유진과 정영미(2019), 대학기록관의 위험관리 현황을 진단한 고은빛과 김현정(2022)의 연구가 있다.

대학기록관리 전반의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성과도 있었다. 임정훈과 강규형(2010)은 ‘설명 책임’의 개념을 적용한 대학기록관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고, 백은지와 이혜원(2013)은 국내 대학기록관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발전방안을 논하였으며, 이해경과 윤유라(2018)는 부산지역 4년제 사립대학의 기록 관련 규정을 분석하였다. 장지혜 외(2021)는 “기록물관리책임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학 처리과 기록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서주은과 이성신(2021)은 K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 행정기록물 관리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경원과 우지원(2023)은 “사립대학 기록관리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신 연구로 김선옥(2024)은 대학기록 관련 규정현황을, 김현정과 배성중(2025)은 대학기록의 부기·정정현황을 각각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대학기록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전개된 것과 달리, 본 연구와 같이 대학기록의 평가에 초점을 맞춘 국내 학술지 연구성과는 전무하다. 다만, 관련 연구로 김진우(2021), 이윤희(2018) 등의 석사학위논문이 있다. 이윤희(2018)는 국공립대학 기록의 평가 현황을 분석하고, ISO 15489의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국공립대학에 적합한 대학기록평가 개선방안을 논하였으며, 김진우(2021)는 국내 36개 국공립 및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규정과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공공기록물법」과 대학별 규정을 비교하여 국제 기록관리표준에 기반한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대학기록관리가 꾸준히 논의되었다. 그러나 대학기록의 ‘평가’에 중점을 둔 연구는 극히 드물다. 기록학 영역의 다양한 연구가 질적 연구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는 와중에도 사립대학의 기록평가제도를 다룬 질적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사립대학을 연구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면담연구를 중심으로 한 질적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두 편의 석사학위 연구와도 차별점을 가진다.

3. 사립대학 기록의 특징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에 따라 국가는 모든 국민이 각각의 능력에 따른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설비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기관이 학교다.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는 국가의 책무이기에 모든 교육기관의 설립주체는 국가여야 하나, 국가 예산의 한계로 인해 모든 국민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이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사인에게 의무이행을 위임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 태어난 제도가 ‘사립학교’다. 사립학교는 국가의 교육 의무이행을 위임받았으므로 공공성과 자율성을 본질적 요소로 한다. 국민에 대한 교육이라는 의미에서는 공공성을 띠며 학교법인이라는 비영리법인이 주체가 된다는 의미에서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배병일, 2008).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가진 사립대학에서 생산된 기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사립대학은 학교법인에 의해 운영되므로 법인 관련 기록이 대학기록에 포함된다. 이는 학교법인이 없는 국·공립대학과 기록 범주의 차이를 보여준다. 「고등교육법」(법률 제20561호) 제3조에 따라 학교는 설립주체에 따라 구분된다. 국공립대학의 설립 및 경영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나, 사립대학의 설립 및 경영 주체는 학교법인이다. 따라서 사립대학의 조직을 구성하는 기본적 사항도 학교법인의 정관, 학칙으로 정한다. 「사립학교법」(법률 제20666호)에서 정의하는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 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뜻하며, 동법

제3조에 따라 학교법인 없이는 사립대학이 설립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재산을 출연하고, 설치 및 경영하고자 하는 사립대학의 종류, 명칭 등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해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법인은 사립대학의 법적 주체이자, 설립자로서 사립대학의 경영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이시우, 2012, 25). 즉, 법인 및 설립자의 철학에 따라 학교 운영 방향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법인 활동에 의해 생산되는 정관, 설립 목적서, 회의록 등은 학교 운영의 지표가 될 중요한 기록이 된다.

둘째, 사립대학의 기록관리 필요성에 대한 초기 인식은 대학사 자료관리의 필요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대학사 자료관리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수행되는 활동이지만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기록관리 제도의 출발점이 역사 자료 수집과 보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특징을 가진다.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에 비해 기록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미비하였기 때문에 대학사 자료 수집과 보존이 자발적인 기록관리의 계기가 되었다. 사립대학 기록관의 초기 형태는 교사자료실에서 시작되었다. 일부 사립대학은 개교 90주년, 100주년 등 특별한 기념 행사를 위해 대학의 연혁사 자료를 대대적으로 수집하면서, 수집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료의 소실을 우려한 몇몇 대학은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기구를 설립하였다. 이 기구들은 교사자료실, 교사사료실 혹은 교사편찬실 등의 각기 다른 명칭으로 역사자료 수집 및 보관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사례로, 1989년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역사자료실, 1998년 연세대학교 연세기록보존소, 1999년 서강대학교 기록보존소, 2002년 명지대학교 대학사료관, 2003년 한신대 기록정보관, 2004년 고려대학교 기록자료실 등이 있다. 다만, 이들 사립대학들이 본격적인 현용기록관리를 수행한 것은 1999년 「공공기록물법」 제정이 계기가 되었다.

셋째, 사립대학 간에는 설립 배경과 운영 특성에 따라 중점 관리하는 기록 범주에 차이가 있다. 사립대학의 기록관은 행정기록 중심 관리 유형, 대학역사기록 중심 관리 유형, 행정기록과 역사기록 모두 관리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경원, 우지원, 2023, 136). 사립대학은 자율성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특징으로 인하여 설립배경, 목적, 역사, 전통, 행정조직의 특성, 경영자 및 구성원의 기록관리 인식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김상호, 2000)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록이 각기 다를 수 있다.

4. 면담연구

4.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사립대학 기록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 연구를 통해, 실무적인 관점에서의 기록물 평가에 관한 인식과 제도 운영에 대한 쟁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면담 대상은 기록평가 절차가 마련된 대학과 미비한 대학, 그리고 최근 2년 이내에 기록평가 절차를 도입된 대학의 기록관리 담당자들을 고루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쳤다. 첫째, 한국대학기록관협의회에 가입된 4년제 사립대학 중 대학 홈페이지에 기록관리 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학교를 선별하였다. 둘째, 선정된 대학의 학칙 및 내규를 검토하여 기록평가 업무의 유무를 확인한 뒤 해당 대학의 기록관리 담당자에게 우선으로 직접 문의하여 최종 확인하였다.

위 과정을 통해 선정된 면담 대상 대학은 총 7곳이다. 공식적인 기록평가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대학이 3곳, 최근 2년 이내에 평가 절차를 도입했으나, 평가 시행이 1회에 그쳤거나 미수행된 대학 2곳, 그리고 평가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대학 2곳이다.

사립대학 기록 평가 업무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질문지를 기록 평가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질문지의 타당도를 점검하기 위해 기록연구자

1인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 1인에게 사전 검토를 받아 일부 질문을 수정하였다. 기록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면담참여자들을 위한 질문을 확장하고, 문제점 관련 질문을 보완하였다.

면담은 2025년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었다. 면담은 대면으로 진행하였으며 부득이하게 대면 면담이 어려운 면담참여자는 서면 및 유선으로 대체하였다. 서면으로 진행한 면담은 이메일로 소통하였으며 질문의 의도와 방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전 안내한 후 면담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응답지를 회신받았다. 응답지 회신 후, 답변의 명확성을 확인하고자 2회에 걸쳐 다시 이메일로 소통하였다. 대면과 유선으로 진행한 면담 내용은 면담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을 진행하였다. 면담의 평균 소요 시간은 약 58분이었다. 면담참여자 경력, 기관 현황, 면담방법 및 일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전원 「공공기록물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인 면담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면담 기관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자 면담 대학의 재학생 수는 원자료 기준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근사치로 표기하였다.

<표 1> 면담참여자 경력, 면담기관 현황, 면담방법 및 일정

면담참여자			기관현황			면담방법 및 일정		
연번	자격	근무경력	재학생수(명)	평가절차존재여부	평가시행여부	방법	일자	소요시간
A	기록물관리전문요원	2년	25,300	있음	○	대면	2025. 3. 26.	72분
B	기록물관리전문요원	1년	19,800	있음	◎	대면	2025. 3. 26.	101분
C	기록물관리전문요원	2년	10,000	없음	×	대면	2025. 3. 27.	52분
D	기록물관리전문요원	20년	19,500	있음	◎	유선	2025. 3. 28.	21분
E	기록물관리전문요원	16년	33,000	없음	×	대면	2025. 3. 28.	53분
F	기록물관리전문요원	4년	1,800	있음	◎	서면	2025. 3. 31.	-
G	기록물관리전문요원	6개월	9,600	있음	×	유선	2025. 4. 6.	52분

평가시행여부: ◎ 정기시행 ○ 1회 시행 × 미시행

4.2 면담 분석

본 연구는 면담참여자와의 면담 녹취 파일을 N사의 AI 음성 번역 및 분석기 솔루션을 통해 전사하였고 전사 자료를 정독하여 부정확하게 도출된 단어는 녹음본을 재청취하여 교정하였다. 면담 내용의 범주화를 위해 근거이론 방법의 하나인 개방 코딩(Open Coding)을 사용하였다.

코딩 작업을 위해 질적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인 ATLAS.ti를 활용하였다. 1차 코딩에서 데이터를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문단, 문장, 구절 순으로 3단계에 거쳐 코드를 부여하였다. 그 결과 총 181개의 코드가 도출되었다. 2차 코딩에서 181개의 코드를 유사한 의미를 가진 코드로 그룹화하여 86개 하위 범주로 분류하였다. 3차 코딩에서 2차 코딩 결과를 기반으로 한 재범주화를 수행하여 ‘현황’, ‘문제점’, ‘개선점’ 3개 영역하의 13개 상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표 2>는 영역별 상위 범주 내용과 코드 빈도를 정리한 것이다. 하위 범주 내용과 코드 빈도는 영역별 면담 분석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표 2> 영역별 상위 범주 및 코드 빈도

영역	상위 범주	코드 빈도	백분율
현황	조직 및 인력 구성, 대학별 특성, 기록 유형, 평가 폐기 절차, 기록물평가심의회	107	59
문제점	학내 구성원 인식 및 인프라 문제, 평가 절차 및 제도 문제, 기록관리 문제, 외부 협력 및 지원 부재 문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어려움	48	27
개선점	학내 구성원 인식 및 인프라 개선점, 평가절차 및 제도 개선점, 외부협력 및 지원 관련 개선점	26	14
	합계	181	100

4.2.1 현황 영역

‘현황’ 영역의 상위 범주인 ‘조직 및 인력 구성’, ‘대학별 특성’, ‘기록 유형’, ‘평가·폐기 절차’, ‘기록평가심의회’의 각 하위 범주와 코드 빈도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현황 영역의 상위 범주별 하위 범주 및 코드 빈도

영역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코드 빈도
현황	조직 및 인력 구성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인원,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소속 부서, 병행업무, 전담조직구성, 팀조직 평가업무 효율성	7
	대학별 특성	개인정보보호법 기준 문서관리, 기록관 설치 사유, 기록관 연혁, 기록관 구성원 전공배경, 기록관리,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최초 배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배경, 대학특성기반 개교기념 기록관리 활성화	15
	기록 유형	관리기록 유형 다양성, 기록관 설치 관련 소장기록, 기록생산주체 다원화, 역사기록 중심 관리체계, 중요기록 보관부서 존재, 행정·역사기록 통합관리, 행정기록 중심 평가·폐기	13
	평가·폐기 절차	규정시행 초기, 규정 제·개정 필요, 기록관리시스템 사용여부, 기록생애주기 기반 평가, 대학 여건 반영 평가절차, 보존기간 만료 기록의 가치기준, 처리과 실사, 처리과 의견조회, 처리과 자체보존, 평가 업무절차, 평가작업 소요기간, 폐기업무절차, 학내구성원 대상 기록관리 교육	47
	기록평가심의회	안전, 미운영, 위원구성, 위원 위촉기준, 개최시기, 폐기결정권, 대학별 조직도에 따른 위원 위촉	25
합계			107

1) 조직 및 인력 구성

‘조직 및 인력 구성’ 범주에서는 면담참여자들이 소속된 기록관의 체제와 구성 그리고 업무 분장에 대한 내용이 분석되었다. 면담참여자들은 팀 단위로 기록관리를 전담하여 팀원과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1인 기록관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1인 기록관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면담참여자는 기록관리 업무 외 정보공개, 인사, 근태관리, 직인관리, 대내외문서 배부, 서무 등 여러가지 업무를 함께 담당하여 기록관리 업무만 집중할 수 없는 실정을 언급하였다(면담참여자 G). 더불어 대학의 학생 수 대비 교직원 수의 부족으로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보충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단순 작업을 위한 인력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기록 관리 업무가 주 비중이긴 하고 팀원들도 그걸 챙겨주고 더 업무를 안 주려고 하긴 하는데 워낙 대학이 사람이 적거든요. 생각보다 재학생 인원수에 비해 일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다양한 일을 작은 팀에서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맡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면담참여자 A)

기록관리 담당 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도서관, 기록관, 역사관, 박물관 등에 소속되어 있으며, 면담참여자 외 팀원들은 학예사, 행정직원, 계약직원, 조교로 구성되어 있었다. 일부 면담참여자들은 제한된 인력 내에서 실무를 분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록관리 업무와 학예 업무가 병행되는 사례가 일상화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면담참여자 B, 면담참여자 E).

2) 대학별 특성

‘대학별 특성’ 범주에서는 사립대학의 특성에 따른 기록관리의 본격적 시작과 기록관리전문요원 배치의 계기에 대한 면담참여자들의 진술이 분석되었다.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배치하여 기록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국가기록원에서 제시한 기록관리 지침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국가기록원에서 내려온 보존기간 준칙을 보고 전문 요원을 채용해야 된다고, 역으로 추진을 한 실정이라구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법령만 있었는데 준칙이 제정이 되고 나서 (...) 저희 소속이셨던 부처장님이 그거 보시고 이것을 토대로 ‘기록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 (면담참여자 G)

또한 외부기관의 감사에서 기록 무단폐기를 지적받은 계기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처음 배치하고 기록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례(면담참여자 B)와 개교기념행사를 계기로 기록관이 최초로 설치되고, 대학 역사기록 위주로 기록을 수집하여 기록관리가 활성화된 사례도 있었다(면담참여자 E).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 이전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문서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기록평가 및 폐기는 수행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면담참여자 G). 면담대상인 한 사립대학은 「공공기록물법」의 기준과는 다른 기록평가 절차를 운영하고 있었다. 법령과 다른 이관 기간이 적용되고 있었다.

“(...) 상세한 평가폐기 업무 절차는 우리 대학만의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공공기록물법」에서는 보존기간 2년이 지나면 처리부서에서 이관해오고 처리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지만 (...) 우리 대학은 처리부서에서 10년간 보존하다가 기간이 만료된 기록의 목록만 제출받아 (평가·폐기에 대한) 처리부서 의견을 조회하고 있어요.” (면담참여자 D)

3) 기록 유형

‘기록 유형’ 범주에서는 기록의 유형에 따른 평가·폐기 업무의 특성에 관한 내용이 분석되었다. 각각의 여건에 따라 행정기록만 중점으로 관리하거나 역사기록만 수집하는 편제적인 기록관리를 수행하는 대학이 존재했으며(면담참여자 E), 종이문서, 전자기록, 시청각기록, 간행물, 행정박물 등 다양한 형식의 기록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학도 있었다(면담참여자 F).

또한 학생, 교수, 교직원 등 구성원이 다양한 만큼 여러 유형의 기록이 관리의 범주 안에 혼재되어 있었다. 한 면담참여자는 행정기록과 역사기록 각각에 대한 분류와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폐기가 행정기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 다만 행정 기록과 역사 기록(으로) 나누기가 조금 애매한 게, 입학처 기록, 학생들 입시 자료, 교수님들 (자료까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행정 업무상 발생하는 행정 기록만으로 호칭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다양한 기록이 혼재되어 있어요.” (면담참여자 A)

4) 평가·폐기 절차

‘평가·폐기 절차’ 범주에서는 평가·폐기 규정의 유무와 평가·폐기 업무 운영 현황에 대한 면담참여자들의 진술이 분석되었다. 면담 대상 대학 7곳 중 공식적인 평가·폐기 규정을 마련한 대학은 5곳이었고, 부재한 곳은 2곳이었다. 평가·폐기 규정이 있는 대학 중 최근에 규정을 제정하여 실질적인 평가를 시행한 이력이 없는 대학도 있었다(면담참여자 G). 평가를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처리과 소장 기록 목록 수집, 기록 현황 파악, 처리과 의견 조회, 기록물관리전문요원 평가,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폐기, 보류, 및 보존기간 재책정을 결정하는 일반 공공기관의 기록평가절차를 따르고 있었다(면담참여자 B, 면담참여자 D)

하지만 평가의 결과가 폐기로 결정된 경우, 폐기의 최종 승인자는 각 대학의 조직구조에 따라 상이했다.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소속 팀의 장부터 대학의 장까지 결재를 진행하는 대학(면담참여자 A)이 있는 반면, 기록관리 담당 부서장의 승인으로 폐기를 최종 승인하는 대학도 있었다(면담참여자 D). 다만, 후자의 경우, 이를 총장의 최종 승인받는 절차로 변경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기록 평가 폐기 절차가 부재한 대학의 경우는 사료 위주의 기록관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수집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평가 폐기 규정과 절차의 부재로 인하여 공식적 폐기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고, 자체적인 임의기준으로 복본의 일부 부수만 처리하고 있었다.

“이관 받는 그대로 수집만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폐기 절차가 있진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서고가 부족하니깐 (...) 복본 수가 너무 많으면 기록의 중요도를 판단해서 (복본의 일부 부수)는 폐기하고 있어요.” (면담참여자 C)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대학에서는 처리과의 협조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었다. 기록생산자로서 기록의 1차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처리과 구성원의 기록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기록평가업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여 대학 내 모든 처리과마다 기록관리책임자를 지정한 대학이 있었다(면담참여자 B). 처리과 실사 과정에서 소장기록 현황 파악과 함께 보존기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인 대학도 있었다. 직접 처리과를 방문하여 직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평가 폐기에 관한 지도점검을 진행하여 처리과와의 기록관리 협조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었다(면담참여자 G). 면담참여자들은 대학 내 처리과의 수에 비해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인력이 현저하게 적어 처리과의 협조 없이는 평가 폐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처리과의 인식 제고와 협력을 강조했다.

5) 기록평가심의회

‘기록평가심의회’ 범주에서는 기록평가심의회 위원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이 분석되었다. 기록평가심의회는 위원장, 내부 및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기록관리 담당 부서의 장이며 내부위원은 학교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행정부서의 고위 관리자급이 위촉된다. 한 면담참여자는 위원의 선발은 기록 생산 부서의 역할과 조직 구조, 위원의 업무 경력 등 기록의 중요도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위원장은 저희 부서장이신 처장님이예요. 학사팀장님이라 입학관리팀장님이 내부 위원으로 들어와 계세요. 일단 두 부서가 학생 관련된 기록을 제일 많이 하기도 하고 (...) 기록에 대해 이해도가 깊으시고 다른 한 분은 경력이 30년이 거의 다 돼 가지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역사적인 것도 잘 아시고 그래서 위촉했습니다.” (면담참여자 A)

4.2.2 문제점 영역

‘문제점’ 영역의 상위 범주인 ‘학내 구성원 인식 및 인프라 문제’, ‘평가 절차 및 제도 문제’, ‘기록관리 문제’, ‘외부 협력 및 지원 부재 문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어려움’의 각 하위 범주와 코드 빈도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문제점 영역의 상위 범주별 하위 범주 및 코드 빈도

영역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코드 빈도
문제점	학내구성원 인식 및 인프라 문제	무단폐기 문제의식 부족, 보존시설 열악, 예산 부족, 전문인력 부족, 처리과 비협조	17
	평가 절차 및 제도 문제	기록관리시스템 부재, 교내 기록관리 규정 미흡, 평가·폐기 절차 부재, 보존기간 준칙 세분화 필요, 비전자기록물 목록 데이터화	10
	기록관리 문제	학내 소장 기록 현황 불확실, 처리과의 폐기 요청, 기록 훼손, 기록 소실, 기록 포화	8
	외부 협력 및 지원 부재 문제	교육부 감사대상 대학 확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미흡한 컨설팅,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교육 개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 교육부 감사 강화	7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어려움	제도와 실무 차이, 고용불안정, 기록관리 외 업무 과다, 평가기준 난제, 교육의 필요성	6
합계			48

1) 학내 구성원 인식 및 인프라 문제

‘학내 구성원 인식 및 인프라 문제’ 범주에서는 평가·폐기 업무에 필수적인 시설, 예산, 인력 등의 부족 문제에 대한 면담참여자들의 진술이 분석되었다. 면담참여자들은 기록평가와 폐기 업무 시 학내 구성원의 인식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학내 구성원에게 기록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무단 폐기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기록 무단폐기가 실제 형사 집행이 되는 (...) 범죄가 될 수도 있잖아요. (...) 국가기록원에서 사립대학 점검을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관련자한테 어필을 하고 있죠.”(면담참여자 E)

다만, 한 면담참여자는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사후적 평가와 점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교육 이후에도 학내 구성원의 인식 개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교육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사립대학의 경우 직접적인 성과가 명확하지 않거나 외부의 강제력이 있지 않으면 사업 추진에 대한 동기가 약화된다고 언급하였다(면담참여자 C). 기록관리의 활성화는 제도적 당위성보다 현실적 강제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견이었다.

“사립대학들은 국가나 사회가 강제하든, 내부 구성원이 강제하든 그런 강제하는 목소리가 없다면 굳이 인력과 공간과 예산을 이 사업에 투입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면담참여자 E)

2) 평가 절차 및 제도 문제

‘평가 절차 및 제도 문제’ 범주의 하위 범주는 ‘기록관리시스템 부재’, ‘교내 기록관리 규정 미흡’, ‘평가·폐기 절차 부재’, ‘보존기간 준칙 세분화 필요’, ‘비전자기록물 목록 데이터화’다. 면담참여자들은 기록관리 제도가 형식적으로 마련되어 있더라도 대학의 특수성과 자원의 한계로 인해 제도의 현장 적용이 어렵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한 면담참여자는 이론과 실제의 간극을 지적하며, 업무를 진행하면서 추후에 규정을 만들었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면담참여자 D). 국가기록원에서 제시한 ‘대학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이나 규정이 대학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보존 기간 준칙에 대학 상황 고려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 학위증이 지금 학사팀에 너무 많이 쌓여 있대요. (...)

근데 그거를 학사팀에서 매 학기 영구 보관하기에는 공간이 없어요.” (면담참여자 B)

또 다른 면담참여자는 국고 지원 사업단 등에서 생성한 기록의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별도 이관 절차나 보존 계획 없이 방치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비공식적 폐기의 위험성을 제기하였다. “국가지원 사업 (...)자료들은 관리하는 사람, 인계받는 사람 없이” 방치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평가·폐기 업무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면담참여자 A). 한편, 한 면담참여자는 기록평가 목록을 엑셀로 관리하고 있다며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기록평가 목록을 지금 엑셀로 관리하고 있어요. 기록물관리시스템이 있었으면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작업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시스템이 없다고 필요한 과정을 생각할 순 없잖아요. 저는 시스템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면담참여자 D)

3) 기록관리 문제

‘기록관리 문제’ 범주에서는 기록평가의 중요성을 방증하고 있는 기록 통제, 훼손, 소실, 포화 등의 문제에 대한 내용이 분석되었다. 면담참여자들은 행정기록 중 중요기록인 인사기록이 이관되지 못했거나 보존되지 못한 사례(면담참여자 A)와 기록 훼손, 소실, 포화 상태를 언급하며 기록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면담참여자 F). 특히 기록의 포화 상태는 처리과의 자발적 폐기 요청으로 이어지지만 학내 소장 기록의 현황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요청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기록들을 잠시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관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목록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서에 제가 목록 양식을 드리고 양식에 전부 적어달라고 했어요. (...) 부서마다 빨리 버리고 싶다는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중에 제일 급해 보이는 부서를 선별해서 (...)” (면담참여자 A)

면담참여자들은 합리적 평가·폐기 절차의 확립이, 기록의 소실, 훼손을 방지하고, 중요 기록을 보존하며, 기록의 적체 문제를 해결하는 등 기록관리 전반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담참여자 A, 면담참여자 D, 면담참여자 F).

4) 외부 협력 및 지원 부재 문제

‘외부 협력 및 지원 부재 문제’ 범주에서는 사립대학 기록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면담참여자들의 진술이 분석되었다. 다수의 면담참여자는 사립대학의 기록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였다.

“국가기록원에서 대학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대로 된 그런 홍보 활동을 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고 또 그거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경고라든가 아니면 위반에 따른 어떤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사실은 걸리면 그때 하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면담참여자 E)

한 면담참여자는 사립대학 내 구성원 인식 제고를 위해 국가기록원, 교육부 등 외부기관의 현장 점검 및 감사를

더욱 강화하고 점검 대상을 확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교육부 감사에서 기록관리 항목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교육부 감사 때 기록관리 항목이 같이 다뤄지거나 점검 대상 기관을 더 넓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오히려 전문요원 입장에서는 안 좋은 지적이라도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조직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좀 더 가질 수 있으니까요.”(면담참여자 G)

5)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어려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어려움’ 범주에서는 면담참여자들 자신들이 겪고 있는 평가·폐기 업무상의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면담참여자들은 기록평가·폐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현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평가·폐기는 여러 부서나 캠퍼스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만큼 더욱 어려움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안정적인 평가 업무를 위해서는 추가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 면담참여자는 보존기간 준칙에 기재된 보존연도와 실제 현장의 상황에 따른 기준이 상이할 때 처리과의 즉각적인 처분 결정 요청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제가 평가하기 어려운 기록물들이 있잖아요. 부서에 바로 안내해 드리기가 어려워요. (...) 물론 시간만 있으면 평가 업무는 할 수 있어요. 국가기록원에 문의하거나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처리과에서는 빨리 해결해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면담참여자 B)

또한 사립대학 내 현실적인 인력 구조와 관련지어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역할과 전문성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였다. 불안정한 고용환경에서 기록평가에 대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전문성 발휘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대학 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계약직 신분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하며, 평가업무가 기계적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였다(면담참여자 E).

4.2.3 개선점 영역

‘개선점’ 영역의 상위 범주인 ‘학내 구성원 인식 및 인프라 개선점’, ‘평가 절차 및 제도 개선점’, ‘외부 협력 및 지원 관련 개선점’의 각 하위 범주와 코드 빈도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개선점 영역의 상위 범주별 하위 범주 및 코드 빈도

영역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코드 빈도
개선점	학내 구성원 인식 및 인프라 개선점	학내 구성원 인식 개선 요구, 예산 지원, 처리과 협조, 학내 구성원 협조, 무단폐기 위험성 인지	5
	평가 절차 및 제도 개선점	평가 규정 제·개정 필요, 분류기준표 세분화 필요, 처리과 기록현황 파악, 기록관리시스템 도입, 처리과 의견 수렴 절차,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역량 강화, 부서별 기록관리책임자 지정, 기록관리책임자 대상 교육	12
	외부 협력 및 지원 관련 개선점	보존기간 준칙 개정, 감사 강화 및 확대, 기록관리 교육 방식 개선, 제도 강제성 확보, 「공공기록물법」 미준수 제재 강화,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 2차 가치 판단 위한 다양한 교육, 외부 감사 확대 필요	9
합계			26

1) 학내 구성원 인식 및 인프라 개선점

‘학내 구성원 인식 및 인프라 개선점’ 범주에서는 학내 구성원의 인식 개선, 예산 지원, 처리과 협력 등 다양한 개선점이 논의되었다. 면담참여자들은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리과와의 협력이 핵심이며, 분류기준표 수립 과정에서 실무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업무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록연구사가 일방적으로 만들고 처리부서에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실무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분류기준표를 만들어요. 그게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면담참여자 D)

대학 구성원들이 무단폐기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폐기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면담참여자 A). 사립대학이 「공공기록물법」의 적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구성원이 기록평가·폐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록물관리전문요원만의 업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대학 구성원 전반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일단 학교가 이 기록평가·폐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명확히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기록관에 근무하고 있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정도만 알고 있고 나머지 대학의 운영자라든가 실제로 우리 대학에서 행정 문서를 관리하고 있는 총무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조차 그 이슈를 잘 몰라요.” (면담참여자 E)

다만, 일부 면담참여자들은 사립대학의 특성을 언급하며, 학내 구성원의 인식과 인프라 개선을 내부적 동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외부적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한 면담참여자는 「공공기록물법」에 명시된 기록 평가·폐기 업무를 위한 요건과 절차 준수를 대학평가의 한 부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하였으며(면담참여자 C), 또 한 면담참여자는 「공공기록물법」 위반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적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면담참여자 E).

2) 평가 절차 및 제도 개선점

‘평가 절차 및 제도 개선점’ 범주에서는 기록 평가의 규정, 절차, 기준에 대한 개선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과 기록관리 책임자 교육에 관한 면담참여자들의 논의가 분석되었다. 면담참여자들은 기록물관리전문인력 충원이 어려운 현실에서 처리과마다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배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평가·폐기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일깨워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응답했다.

“실질적으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뽑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깐 그러면 기록물관리 책임자라도 지정하고, 잘 교육하고, 점점을 가고, 라포를 형성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평가 업무를 할 때 지장이 없도록 도움을 받으면 업무를 하는 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면담참여자 G)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에서 평가·폐기의 법적 절차 안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이 직접 기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관점을 함양하는 교육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담참여자 E). 또 다른 면담참여자는 소속 대학의 기록관리책임자와 교육 대상의 범위를 직원에서 교원까지 확대한 점을 강조하며 학내 구성원

의 책임감을 높이고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록연구사 인력 보충이 없다면 각 부서의 기록관리책임자는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전체 교직원과 교원들 대상으로 자체 교육도 올해 할 예정이에요. 작년까지는 전 직원 대상이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교원까지 확대됐어요.”
(면담참여자 B)

기록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처리과 기록 현황과 관리 실태 확인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은 기록분류기준표를 정비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면담참여자들은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기록 분류기준표를 마련하여 기록물관리전문요원뿐만 아니라 처리과 직원들도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저희 기록분류기준표도 세분화돼서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저는 기록분류기준표 책자 하나 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 책자를 처리과에 배부해서 각 부서의 기록관리책임자들이 그 책 하나만 봐도 보존기간을 알 수 있게 하고 싶어요.” (면담참여자 B)

또한 면담참여자들은 개선점으로 기록관리시스템 기반 평가·폐기 체계 구축을 제기하였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록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시스템적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관, 폐기 등을 포함한 기록관리업무 전반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면담참여자 G).

3) 외부 협력 및 지원 관련 개선점

‘외부 협력 및 지원 관련 개선점’ 범주에서는 정기적 감사 제도, 기록관리 교육 개선, 제도 강제성 확보, 법령 미준수 제재 등과 관련된 면담참여자들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면담참여자들은 기록평가와 폐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이 우선되어야 하기에 정기적인 감사나 평가가 제도적 장치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평가·폐기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실무 중심의 교육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국가기록원의 교육 지원을 언급하였다.

“감사나 평가를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대학 내에서도 기록관리가 소홀하면 대학 평가 점수가 깎인다는 인식이 생기잖아요. 그럼 명분도 생기고 기록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기록원이 실무자를 위한 교육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 분류기준표를 어떻게 만들고 적용해야 하는지 같은 실무 중심 교육은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을 국가기록원이 보완해주면 좋겠어요.” (면담참여자 A)

국가기록원(2024b)의 ‘대학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이 대학의 상황과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의 단위업무 단위에서 철 단위로 세부화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면담참여자 B, F). 한편 기록관리시스템 도입이 절실하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 도입의 한계를 겪고 있다며, 국가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면담참여자 B).

5. 사립대학교 기록평가업무 개선방안

사립대학교의 기록평가 업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적 대응과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사립대학교 기록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운영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이러한 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5.1 운영 측면

5.1.1 학내 구성원 인식 및 인프라

사립대학의 기록평가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내 구성원의 기록관리 인식 제고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조직적 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면담 연구 결과,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내 구성원의 기록관리 인식 수준이 낮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방대한 기록관리 업무가 소수의 전문인력에게만 집중되는 구조로 인해, 기록의 평가와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학내 구성원의 기록관리 인식 제고를 위해 기록관리 교육의 법정 의무화가 필요하다. 현재 교직원 및 교원은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폭력 예방, 장애인식 개선 등 다양한 법정 의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고 있으나, 기록관리에 대한 교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록평가의 필요성과 업무 절차, 기록 무단폐기의 위험성, 감사 지적 사례 등을 포괄하는 기록관리 교육을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 온라인 강의 수강과 핵심적 기록 윤리에 대한 퀴즈를 통해 최소한의 인식 제고를 기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특히, 대학 내 부서 및 부속기관에 기록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들에게는 학내 구성원을 위한 온라인 교육 후, 오프라인 교육을 별도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5.1.2 평가 절차 및 제도

기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록분류기준표의 구성과 평가 절차가 처리과의 실제 업무 흐름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면담 결과, 처리과에서 기록분류기준표를 직접 활용하기 어렵고, 기록 소장 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조차 확보되지 않은 채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처리과의 공간 부족과 기록 포화로 인해 폐기 요청이 잦지만, 이관이나 목록화가 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기록분류기준표 제개정 시 처리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기록분류기준표 수립에 기록의 생산주체이자 1차 평가를 담당하는 처리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립대학 현장 중심의 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기록분류기준표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학내 소장 기록을 파악하기 위한 처리과 실사 제도화가 필요하다. 면담 연구에서 합리적 기록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처리과의 기록 현황과 관리 실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처리과 구성원과 우호적 협조 관계를 형성하고 자연스러운 기록관리 지도 및 감독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5.1.3 외부 협력 및 지원

사립대학의 기록평가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학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외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면담 연구에 따르면, 현재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 관련 교육이 충분하지 않아 기록 가치를 다각도에서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이나 전문인력 배치 역시 대학 자체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대학의 다양한 조직 구조와 업무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보존기간 준칙은 평가 실무에서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이에 교육지원, 기록관리기반 구축, 준칙 개정 등이 요구된다.

첫째, 정부 차원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전문성 강화 교육 지원이 요구된다. 기록평가에서 기록의 행정적 가치와 법적 가치를 넘어 역사적, 연구적 가치를 판단하는 주체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다. 따라서 대학 기록의 다층적인 가치를 포착하기 위해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지속적인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행정적 요소 내에서만 기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평가할 학문적 지식과 다양한 관점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면담 연구에 따르면,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온라인 교육과 현장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기록평가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정부 차원의 표준화된 커리큘럼 개발, 교육 인증 제도 연계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기록원의 ‘대학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개정이 필요하다. 앞서 면담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현행 준칙은 업무 유형의 세분화나 대학 조직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업무 유형을 상세히 분류하고, 대학 현장에서 평가 업무에 반영 가능한 보존기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사립대학에서는 이를 준용하여 자체 기록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1.4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업무 환경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대학 기록물의 평가와 폐기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이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열악한 업무 환경 문제는 사립대학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사립대학의 특성으로 인해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면담 결과, 다수의 부서 및 부속기관과 분할된 캠퍼스의 다양한 학내 구성원들이 생산하는 기록을 동시에 관리하는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현재의 인력 규모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설립 및 경영 주체는 학교법인의 기록까지 포괄해야 하는 사립대학의 특성은 업무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단기간에 여러 부서의 폐기 요청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록의 가치를 신중히 판단하기보다는 보존기간 준칙에 기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면담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거듭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록관리 담당조직과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

첫째, 기록관리 담당 조직을 독립기관으로 설치하거나 최소한 팀 단위로 설치해야 한다. 기록관의 독자성이 확보되어야 인력 확보, 서고 마련, 안정적 예산 편성이 가능하며, 기록평가업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정규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한 기관에 최대 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2년 이내에 학교 전체의 업무를 파악하고 기록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기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보존기간 준칙이나 기록분류기준표에 의존하여 기계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 평가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 그리고 학내 신뢰성을 위해 고용 형태를 정규직으로 하여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립대학교의 기록평가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방면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그러나 운영상의 개선만으로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평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 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에서는 사립대학교 기록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측면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5.2 법제도 측면

사립대학 기록관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정부의 사립대학 기록관리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록평가를 포함한 사립대학 기록관리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 법령을 준용하되, 제도적 자율성이 확보되는 규정을 마련하여 사립대학이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선 문헌연구에서 논한 바와 같이 사립대학은 국가의 교육 책무를 위임받은 기관으로서 공공기록 관리의 법적 책임을 가지는 동시에 학교법인을 중심으로 한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가지며 대학 고유의 행정구조, 역사, 경영자와 구성원의 기록관리 인식 등에 따라 기록관리체계와 평가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의 기록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기록관리체계 전반의 지원, 지도, 감독, 평가를 받는 국립대학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이에, 기록관리표준의 제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록물법」 제40조와 동법 시행령 제75조에 국가기록원장으로 하여금 국가표준을 참조한 자체 기록관리기준 및 절차의 수립을 검토·승인 또는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하여, 사립대학 기록관리체계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둘째, 정부 기관의 사립대학 기록관리 점검 강화가 요구된다. 2021년 국가기록원은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기록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사립대학을 포함한 15개 대학에 컨설팅 지원을 한 바 있으나(국가기록원 공공기록지 원과, 2021, 6), 기관장 교체 후 후속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연단위로 실시하는 국가기록원과 교육부의 기록관리 평가 대상에서도 사립대학은 제외되어 있다. 면담 연구에서는 기록관리 관련 사업이 대학 내에서 예산, 공간, 정책적 측면에서 후순위이며,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직접적인 성과가 명확하지 않거나 외부의 강제력이 있지 않으면 사업 추진에 대한 동기가 약화된다는 의견이 다수 언급되었다. 따라서,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계적 기록평가를 통한 행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 외부 감사 및 평가를 규정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록관리 상태의 점검 및 조치를 명시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기록원의 실태 점검, 교육부 감사 등 정부 기관의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6. 맺는 글

사립대학교의 기록평가는 실무와 제도의 간극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법적 강제력이 미비한 상황에서 평가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안착시키는 것이 난망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사립대학 현장에 재직하고 있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관점을 기반으로 사립대학 기록평가 업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다만, 제한된 면담참여자의 의견으로 국내 사립대학 기록평가 상황을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헌 연구와 면담 연구를 통해, 사립대학의 체계적 기록평가를 위하여 대학 구성원의 협조와 인식 그리고 다양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바른 기록평가를 통해 어떤 기록을 남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후대에 어떠한 역사를 남길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다름

아니다. 기록평가에 대한 사립대학의 활동은 현용적 행정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대학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대학의 역사를 후대에 전승하는 활동 그 자체다. 사립대학 기록평가업무의 개선이 시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립대학의 기록평가에 관한 다양한 후속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 고등교육법. 법률 제20561호.
- 고은빛, 김현정 (2022). 기록관의 위험관리 현황 진단 연구: 대학기록관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1), 109-132. <https://doi.org/10.14404/JKSARM.2022.22.1.109>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09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506호.
- 구영미, 홍현진 (2019). 대학기록관의 내부마케팅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4), 235-254. <https://doi.org/10.14699/kbiblia.2019.30.4.235>
- 국가기록원 (2024a). 국가기록원 주요통계 (2024.6.30. 기준).
- 국가기록원 (2024b). 대학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 국가기록원 공공기록지원과 (2021). 2021년 공공기관·대학 기록관리 중점 추진사항. 국가기록원.
- 김두리, 김수정 (2014). 대학기록관 이용자의 기록정보서비스 인식에 관한 연구: J교육대학교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1(4), 29-47. <https://doi.org/10.3743/KOSIM.2014.31.4.029>
- 김민경, 소정의, 김유경, 오효정 (2018). 폐교 사립대학 기록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 서남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4), 203-225. <https://doi.org/10.14699/kbiblia.2018.29.4.203>
- 김상호 (2000). 대학기록보존소의 기능과 조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1), 259-278.
- 김선옥 (2024). 대학 기록 관련 규정의 현황 분석과 개선 방향.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5(3), 105-135. <https://doi.org/10.14699/kbiblia.2024.35.3.105>
- 김송, 김누리, 양동민, 이정은 (2025). 폐교대학 기록물의 디지털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5(1), 75-101. <https://doi.org/10.14404/JKSARM.2025.25.1.075>
- 김은진, 구정화 (2020). 국내 대학기록관의 온라인 홍보 활동 분석 및 평가: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4), 283-315. <https://doi.org/10.4275/KSLIS.2020.54.4.283>
- 김진우 (2021). 대학기록물의 평가·폐기제도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김형정, 배성중 (2025). 대학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83, 87-109. <https://doi.org/10.20923/kjas.2025.83.087>
-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 박유진, 정영미 (2019). 대학의 이메일 기록관리 실태와 조직구성원들의 인식: D대학을 사례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2), 193-211.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2.193>
- 배병일 (2008). 사립대학 설립자의 법적 지위. 교육법학연구, 20(1), 83-102.
- 배성중 (2024). 대학기록관의 기록정보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사례연구: 교원 양성기관 역량진단을 중심으로. 질적탐구, 10(2), 141-167.
- 백은지, 이혜원 (2013). 국내 대학 기록관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20, 311-332.
- 사립학교법. 법률 제20666호.

- 서주은, 이성신 (2021). 대학 행정기록물 관리현황과 개선방안: K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2(1), 171-197. <https://doi.org/10.14699/kbiblia.2021.32.1.171>
- 설문원 (2018).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록평가제도의 재설계. 기록학연구, 55, 5-38. <https://doi.org/10.20923/kjas.2018.55.005>
- 손동유 (2004). 사립대 아카이브즈의 위상과 기능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9, 143-163. <https://doi.org/10.20923/kjas.2004.9.143>
- 심상순 (2003). 대학기록관 설치현황과 법적기준에 관한 고찰. 사대도협회지, 4, 197-214.
- 이경원, 우지원 (2023). 사립대학 기록관리 개선방안 연구.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 16, 131-170. <http://doi.org/10.23035/KAICS.2023.1.16.131>
- 이교현 (2001). 대학기록관의 설치·운영방안: 충남대학교를 중심으로. 忠南史學, 13, 143-177.
- 이시우 (2012). 헌법상 사학의 자유와 학교법인의 법적 지위. 법과정책연구, 12(3), 803-838. <https://doi.org/10.17926/kaolp.2012.12.3.803>
- 이윤희 (2018). 대학기록물 평가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공립대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이은정, 강순애 (2020). IPA를 활용한 국·공립대학교 기록관리 담당자의 직무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1), 89-114.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1.089>
- 이재영, 정연경 (2019). 폐교 사립대학 기록물 관리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4), 35-61.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4.035>
- 이재영, 정연경 (2020). 폐교 사립대학 기록물의 분류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서남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3), 39-54.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3.039>
- 이재영, 정연경 (2021). 폐교 사립대학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1), 75-95. <https://doi.org/10.14404/JKSARM.2021.21.1.075>
- 이종흡 (2001). 대학기록관 설립의 필요조건: '미성숙한' 기록관리 방법의 시험 운용 방안. 기록학연구, 3, 33-64. <https://doi.org/10.20923/kjas.2001.3.033>
- 이주현, 이성신 (2018). 사립대학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직무분석: 직무중요도 및 성취도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3), 97-123.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3.097>
- 이혜경, 윤유라 (2018). 사립대학 기록물 관련 규정의 현황과 과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8(9), 335-344. <https://doi.org/10.35873/ajmahs.2018.8.9.034>
- 이혜경, 이해영 (2014). 대학기록관 기록정보서비스의 현황과 발전 방안: 실무자 면담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0, 131-180. <https://doi.org/10.20923/kjas.2014.40.131>
- 임정훈, 강규형 (2010). 대학의 설명책임을 위한 기록관리 개선 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1), 55-76. <https://doi.org/10.14404/JKSARM.2010.10.1.055>
- 장지혜, 김혜영, 윤은하 (2021). 기록물관리책임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학 처리과 기록물 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1), 189-209. <https://doi.org/10.14404/JKSARM.2021.21.1.189>
- 정우철, 이해영 (2016). 대학기록관 이용자의 기록정보서비스 평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1), 195-221. <https://doi.org/10.14404/JKSARM.2016.16.1.195>
- 조민정, 김지현 (2024).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대학기록관 홍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5(3), 77-104. <https://doi.org/10.14699/kbiblia.2024.35.3.077>
- 최정태 (2000). '대학기록관'의 확립과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2), 1-19.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16).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Records management - Part 1: Concepts and principles (2nd ed.) (ISO 15489-1:2016).

<https://www.iso.org/obp/ui/en/#iso:std:iso:15489:-1:ed-2:v1:en>

Williams, C. (2006). *Managing Archives*. Oxford: Chandos Publishing Limited.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 Byungil (2008). Legal status of the founder of private university.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20(1), 83–102.
- Bae, Sung-jung (2024). A Case Study on How a University Archives can Improve its Archives Information Services: Focusing on the Competency Diagnosis Evaluation of a Teaching Institution. *Journal of Qualitative Inquiry*, 10(2), 141–167.
- Baek, Eun Jee & Lee, Hyewon (2013). A Study of the Management Condition and Development of University Archives in Korea.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20, 311–332.
- Cho, Minjung & Kim, Jihyun (2024). A Study on Promoting University Archives through Social Medi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5(3), 77–104.
<https://doi.org/10.14699/kbiblia.2024.35.3.077>
- Choe, Jung-tai (2000). A Study o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University Archiv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1(2), 1–19.
-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onstitution No. 10.
-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Presidential Decree No. 35506.
- Go, Eunbit & Kim, Hyunjung (2022).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Diagnosis of Risk Management: Focusing on University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2(1), 109–132.
<https://doi.org/10.14404/JKSARM.2022.22.1.109>
- Higher Education Act. Act No. 20561.
- Jang, Ji hye, Kim, Hye young, & Youn, Eunha (2021). A Study on Current Status Analysis and Improvement Plans for Records Management in University's Organizations Based on Person in Charge of Records Management Perspect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1(1), 189–209.
<https://doi.org/10.14404/JKSARM.2021.21.1.189>
- Jeong, Woo-cheol & Rieh, Hae-young (2016). Users' Evaluation of Information Services in University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6(1), 195–221.
<https://doi.org/10.14404/JKSARM.2016.16.1.195>
- Kim, Du-ri & Kim, Soojung (2014). A Study on Users' Perceptions of Archival Reference Services in a University Archiv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4), 29–47.
<https://doi.org/10.3743/KOSIM.2014.31.4.029>
- Kim, Eun jin & Koo, Joung hwa (2020). Evaluation and Analysis of Online Public Relation Activities in University Archives: Focusing on the Websit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4(4), 283–315. <https://doi.org/10.4275/KSLIS.2020.54.4.283>
- Kim, Hyunjung & Bae Sungjung (2025).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Content Corrections in University Record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83, 87–109.
<https://doi.org/10.20923/kjas.2025.83.087>

- Kim, Jin woo (2021).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Appraisal and Disposal System of University Archives.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Korea.
- Kim, Min-kyung, So, Jeong-eui, Kim, You-kyung, & Oh, Hyo-jung (2018). A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Plans of Record Management in Closed Private University: Focused on "Seonam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9(4), 203-225. <https://doi.org/10.14699/kbiblia.2018.29.4.203>
- Kim, Sang-ho (2000). A Study on Functions and Organizations of the University Archiv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1(1), 259-278.
- Kim, Seonwook (2024). An Analysis of University Record-Related Regulations and Proposals for Improvement.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5(3), 105-135. <https://doi.org/10.14699/kbiblia.2024.35.3.105>
- Kim, Song, Kim, Nuri, Yang, Dongmin, & Lee, Jung-eun (2025). A Study on the Digitization Strategies for Records from Closed Univers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5(1), 75-101. <https://doi.org/10.14404/JKSARM.2025.25.1.075>
- Ku, Young-mi & Hong, Hyunjin (2019). A Study on Improving User Satisfaction through Internal Marketing of University Archiv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0(4), 235-254. <https://doi.org/10.14699/kbiblia.2019.30.4.235>
- Lee, Eun jung & Kang, Soon ae (2020). A Study on the Job Analysis of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y Records Management Using IP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0(1), 89-114.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1.089>
- Lee, Hye gyeong & Youn, Youra (2018). A Study on the Regulations Related to Records of Private University : Focusing on Busan Area.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9), 335-344. <https://doi.org/10.35873/ajmahs.2018.8.9.034>
- Lee, Hye kyung & Rieh, Hae-young (2014). Current Status and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University Archives' Information Services : Based on the Interview with the Archives' Staff.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0, 131-180. <https://doi.org/10.20923/kjas.2014.40.131>
- Lee, Jae-young & Chung, Yeon-kyoung (2019). A Study on Improving Records Management of Closed Private Universit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9(4), 35-61.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4.035>
- Lee, Jae-young & Chung, Yeon-kyoung (202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Classification System for the Records in Closed Private Universities: Focused on "Seonam Univers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0(3), 39-54.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3.039>
- Lee, Jae-young & Chung, Yeon-kyoung (2021). A Study on Managing Dataset in the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 of Closed Private Universit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1(1), 75-95. <https://doi.org/10.14404/JKSARM.2021.21.1.075>
- Lee, Jong-heup (2001). A Necessary Conditions of Building University Archives: For the Tentative Application of an Immature Archival Method and Program prior to Building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 33-64. <https://doi.org/10.20923/kjas.2001.3.033>
- Lee, Juhyun & Lee, Seongsin (2018). Job Analysis of Archivists of Private Universities Focused on Job Importance and Achievem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8(3), 97-123.

-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3.097>
- Lee, Kyeong won & Woo, Jee won (2023). A Study on Improvement of Records Management in Private Universiti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Information and Cultural Studies*, (16), 131–170.
<https://doi.org/10.23035/KAICS.2023.1.16.131>
- Lee, Kyo-hyeon (2001).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University Archives: Focusing 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outh Chungcheong Historical Studies*, 13, 143–177.
- Lee, See-woo (2012). Verfassungsrechtliche Privatschulfreiheit und Rechtsstellung der Schulischen Juristischen Person. *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 12(3), 803–838. <https://doi.org/10.17926/kaolp.2012.12.3.803>
- Lee, Yun hee (2018). A Study on the Present State and Improvement of University Records Appraisal : Focused on National Public University.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24a). National Archives of Korea Key Statistics (2024.6.30.).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24b). Standard for Preservation Period of Common Work in Universities.
- National Archives of Korea, Public Records Support Division (2021). Key Initiatives for Record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nd Universities in 2021. National Archives of Korea.
- Park, Yu jin & Jung, Young mi (2019). Perceptions and Practices of Employees Regarding Email Records Management in Universities: A Case Study of D Univers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9(2), 193–211.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2.193>
- Private School Act. Act No. 20666.
-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No. 20309.
- Seo, Joo-eun & Lee, Seongsin (2021). A Study on the Management Situation and Improvement Plan of Administrative Documents of University: Focusing on the case of K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2(1), 171–197. <https://doi.org/10.14699/kbiblia.2021.32.1.171>
- Seol, Moon-won (2018). Redesigning Archival Appraisal Policies for Improving Accountability of Public Bodi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55, 5–38. <https://doi.org/10.20923/kjas.2018.55.005>
- Shim, Sang-soon (2003).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Status and Legal Standards of the University Archive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rivate University Libraries*, 4, 197–214.
- Sohn, Dong-you (2004). A Study on Position and Performance of Private University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9, 143–163. <https://doi.org/10.20923/kjas.2004.9.143>
- Yim, Jeong-hun & Kahng, Gyoo-hyung (2010). A Study on Management of Records for Accountability of Univers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0(1), 55–76.
<https://doi.org/10.14404/JKSARM.2010.10.1.055>